

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의 제명 변경(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) 및 타법 개정(항공법 분법)에 따른 우리 부 소관 법령명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명 변경 :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명)

나. 법령 내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(안 제1조~제3조, 안 별지 제1호서식~제4호서식, 안 별지 제10호서식)

다.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근거 현행화(안 별표)

타법 개정(항공법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분법)에 따라 법령 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구분하여 명칭 변경

라. 법령 내 “항공기취급사업체”를 “항공기취급업체”로 변경(안 제3조, 안 별표, 안 별지 제4호서식)

관련 법령(항공사업법) 내 용어정의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항공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첨 부 : 1)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
부개정안

2) 신·구조문대비표

마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
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항공기취급사업체”를 각각 “항공기취급업체”로 한다.

별표 중 1.마.의 “「항공법」”을 “「항공안전법」”으로 하고, 2.바.의 “「항공법」”을 “「항공사업법」”으로, “항공기취급사업체”를 “항공기취급업체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항공기취급사업체”를 “항공기취급업체”로,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국토교통부령명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 리법 시행규칙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비상대 비자원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 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국토교통부령명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(목적) ----- 「비상대 비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 위)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 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 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.	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 위)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 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 다)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다.	제3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 률 시행령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·항공운송사업체 및 <u>항공기취급사업체</u>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. 1. (생략) 2. 항공운송사업체 및 <u>항공기취급사업체</u>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[별표]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1. 관리대상물자 마. 「<u>항공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2. 관리대상업체 바. 「<u>항공법</u>」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체 및 <u>항공기취급사업체</u> [별지 제1호서식]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「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.	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 <u>항공기취급업체</u>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항공기취급업체</u>----- ----- ----- [별표]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1. 관리대상물자 마. 「<u>항공안전법</u>」 ----- ----- 2. 관리대상업체 바. 「<u>항공사업법</u>」 ----- ----- 및 <u>항공기취급업체</u> [별지 제1호서식]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「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[별지 제2호서식] 중점관리대상물 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(건물 및 토지용)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 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 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 무를 고지합니다.	[별지 제2호서식] 중점관리대상물 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(건물 및 토지용)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.
[별지 제3호서식] 중점관리대상물 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(건설기 계·자동차·항공기·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)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 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 른 임무를 고지합니다.	[별지 제3호서식] 중점관리대상물 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(건설기 계·자동차·항공기·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)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.
[별지 제4호서식] 중점관리대상업 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(건설업 체·건설기계정비업체·여객자동 차운송사업체·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체·자동차 정비업체·항공운 송사업체·<u>항공기취급사업체</u>·철 도사업체 및 그 밖의 업체용)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	[별지 제4호서식] 중점관리대상업 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(----- ----- ----- ----- -----·<u>항공기취급업체</u>·--- -----)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

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. [별지 제10호서식] 비축물자 실태 보고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 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.	----- ----- -----. [별지 제10호서식] 비축물자 실태 보고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	
연 락 처	(044) 201 - 3313